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결 정

- 사 건 2022타채136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명령
- 채 권 자 한상조 (590630-1042617)
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16, 104동 3704호(성수동1가, 트리마제)
송달장소 :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55, 중앙서초프라자
307호(서초동)
송달영수인 : 법무사 조명수
- 채 무 자 이민신 (450325-1460114)
안성시 대덕면 황충모랭이길 25
- 제 3 채 무 자 1. 거여2채정비촉진구역1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
서울 송파구 거마로 13, 대화빌딩 4층(거여동)
대표자 조합장 강신선
2. 롯데건설 주식회사
서울 서초구 잠원로14길 29 (잠원동)
대표이사 하석주 (소관 :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 분양 및 관리실)

주 문

1.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다.
2.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
3. 채무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청구금액

별지 기재와 같음

이 유

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세기 작성증서 증서 2022년 제71호 금전소비대차계약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22. 7. 7.

사법보좌관

조인수



- 주의: 1. 이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송달받은 날부터 1주 내에 이 법원에
사법보좌관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
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(법원조직법
제54조 3항,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, 민사집행법 제15조, 제227조, 제229조
참조).
2.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을 공탁할 수 있고
이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(민사집행법 제248조 참조).

별지목록

청구금 800,000,000원

압류할 부동산의표시

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시의부 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

1동의 건물의 표시

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202-180

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111동 401호

구분주거전용면적 : 84.9800㎡

대지지분면적 : 39.8700㎡